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센터」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이차전지 유망기업들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도입과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센터」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북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7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이전기술 조기 사업화 달성을 통한 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기업부담금 10%이상, VAT는 기업부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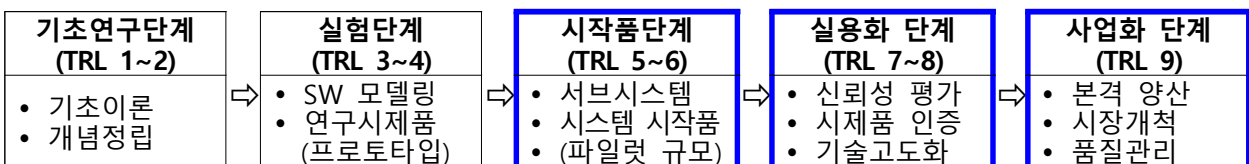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년 11월 30일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4월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이차전지·유망기술을 도입 및 예정기업으로 경북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공고일 기준)

※ 예정기업의 경우 기술이전 협약서 필수 제출

- 지원자격 :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의 기술을 시제품·실용화·사업화하고자 하는 과제



※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ness Level) :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단계별 정의를 내려 기술개발 단계를 1부터 9까지 표현

□ 지원유형

구분	시작품 단계 (TRL 5~6)	실용화 단계 (TRL 7~8)	사업화 단계 (TRL 9)
목적	이전 기술을 적용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제품고도화	양산 및 시장개척
지원 금액	최대 15,000천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기업 분담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지원금액의 10% 이상	지원금액의 10% 이상
지원 유형	패키지 지원 가능		
지원 형태	기술지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회의비, 출장비 등 불인정)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 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직접지급(※간접지원 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 세부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 제 품 제 작	신제품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제 품 고 급 화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공전개선 제외)

※ 지원 결과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必

□ 기업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이상(VAT 제외)

ex) 시제품 제작 : 총비용 18,150천원

: 지원금 15,000천원 + 기업부담금 1,500천원 + 부가세 1,650천원

□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불성실 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절차 : 공급기업에서 지원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자부담과 부가세 납부 영수증을 결과보고서에 첨부 → 경북TP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입금(단, 결과평가를 통해 지급)

4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사업안내 → 이전기술사업
화지원사업 항목 내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5.07.04.(금) ~ 2025.07.2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담당자 : 조욱현 전임연구원(053-819-3052)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기업	①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최근 3년(22, 23, 24년) 재무제표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3, 24, 25년)
	⑧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 시) 기술이전 약약서
	(선택) 지재권 및 인증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등
	(선택) 기업 및 제품, 기술 홍보자료
공급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②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별 세부 견적서(VAT 제외)
	③ 공급기업 자격요건 확인서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시 상기의 순서로 하나의 PDF로 제출

5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의 필요성(35점), 계획의 적정성(35점),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30점) 등
 - ※ 가점사항 : ① 경북테크노파크의 중개 이전 기술의 경우 가점(5점)
 - ② 발명진흥법 제 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기업 가점(5점)

7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 직전연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8

담당자 문의처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조욱현 전임연구원	053)819-3052	jwh333@gbtp.or.kr